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
2023. 11. 30(목) 10:00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30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명절 귀성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명절 귀성차량 대상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주관 단체 지원(안 제 15조의2 신설)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3조제1항, 제7조 제2항제4호, 제9조)
- 다.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성별균형 고려(안 제8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제2항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국민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귀성차량 대상으로 무상 점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1) 명절 귀성차량 대상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주관 단체 지원
(안 제15조의2 신설)
 - 국민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무료 점검 및 주관 단체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
- 2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3조제1항, 제7조제2항제4호, 제9조)
- 3)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 위원회 구성의 성별균형 고려(안 제8조제3항)
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촉위원회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함.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명절 귀성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무상 점검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관계법령

교통안전법

[시행 2022. 1. 28.] [법률 제18343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